장기유배문화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(안)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3)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상수 문화예술과장)

1) 제안이유

❍ 장기유배문화제는 우암 송시열, 다산 정약용 등 조선시대 유배 인물과 장기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, 유배문화를 성찰.소통.교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지역 특화 문화사업임.

❍ 장기지역의 유배문화는 전국적으로도 희소성과 차별성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으로, 유적·인물·주민의 생활문화를 연계한 전문적인 콘텐츠 기획과 지속적인 조사·연구가 필요함. 또한 공연 및 전시, 체험, 인문 프로그램, 지역 협력사업, 교류도시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전문체계가 요구됨.

2)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장기유배문화제

나. 위탁사무개요

○ 사업위치 : 포항시 일원

○ 사업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

○ 사업내용 :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인 장기를 중심으로 유배 인물들이 남긴 역사·인문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제 개최

- 유배문화연구 및 교류, 지역 역사·인문자산 기반 프로그램
- 유배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 협력 프로그램

다. 위탁개요

○ 위 탁 기 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

○ 수 탁 기 관 : (재)포항문화재단

○ 위탁예산(추정) : 100백만원

※ 위탁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

○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

- 장기유배문화제 기획 및 운영 총괄
- 장기유배문화제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자 섭외 등
- 장기유배문화제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조성
- 행사 안전관리 및 운영
- 사업성과 관리 및 결과보고

○ 선정방법 : 수의계약

3) 관계법령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❍ 「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」 제5조(사업의 위탁)

❍ 「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재단의 사업)

❍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의회 동의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경희)

❍ 본 동의안은 장기지역의 유배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장기유배문화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**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, 위탁기간, 수의계약 근거 등** 위탁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, **관련 절차 이행 여부는**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,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사전 이행함.

○ **검토결과** 장기유배문화제는 우암 송시열, 다산 정약용 등 조선시대 유배 인물과 장기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성이 높은 문화사업으로, 축제의 기획·운영,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행사 특성상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함에 따라,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참여프로그램 개발, 도심지내 관련 행사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, 장기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재인 장기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대표 문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　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　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